

[제정]: 2021.08.01.

[1차 개정] : 2022.06.15.

내부정보 관리규정

주식회사 에이프릴바이오



제 1 조 [목적]

이 규정은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신속, 정확한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[용어의 정의]

-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이 규정에서 "내부정보"라 함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(이하 "공시규정"이라 한다)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.
 - 2. "임직원"이라 함은 당사의 이사, 감사, 직원, 고문, 상담역, 대리인, 임시직 및 파견근로자를 말한다.
 - 3. "주식 등"이라 함은 주권, 전환사채권,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기타 주식과 관련된 유가증권을 말한다.
 - 4. "내부자거래"라 함은 당사의 임직원이 당사의 중요정보를 업무상 알게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당사 주식 등을 매매 기타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.
 - 5. "공시책임자"라 함은 당사 중요정보의 종합관리 및 미공개 중요정보의 공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중요정보 공시책임자를 말한다.
 - 6. "공시담당자"라 함은 공시책임자를 보조하는 중요정보 공시담당자를 말한다.

제 3 조 [중요정보의 발생]

- ① 중요정보는 별표 「중요정보편람」에 기재된 공시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주요사항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해당 사유가 생긴 때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.
- ② 중요정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의 판단에 따르며, 이 경우 공시책임자는 판단의 근거자료를 보관,관리하여야 한다.

제 4 조 [중요정보의 관리]

- ①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당사의 중요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,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중요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직원에 대한 정보의 전달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이를 하여야 한다.
- ③ 배우자, 가족, 친지, 친구 등 사외의 자에 대한 중요정보의 전달은 엄중히 금지한다.
- ④ 사내의 공공장소 또는 일반적인 공개장소에서는 중요정보를 화제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.

제 5 조 [소관부서]

- ① 중요정보의 소관부서는 별표 「중요정보편람」에 기재된 바와 같다.
- ② 중요정보가 발생하였을 때 직무상 관련이 있는 임직원은 그 내용을 즉시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고, 소관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공시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 중요정보에 관한 발의, 검토, 관련부서 및 기관 간의 협의, 이사회결의 등 중요 정보 생성에서 공개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일시, 장소, 참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, 유지하여야 한다.



- ④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 부서 정보관리책임자로서 당해 중요정보관리에 적절한 조언과 지도를 하고 중요 정보와 관련된 서류, 자료의 보관, 지출 및 복사 등에 있어 이를 관리, 파악하여야 한다.
- ⑤ 각 부서의 장은 증권회사, 투자자문회사, 투자신탁회사 등의 임직원이 투자정보파악을 위하여 당사를 방문하는 때에는 중요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방문회사, 방문자의 인적사항, 면담내용 등에 관한 방문일지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 6 조 [중요정보의 사외위탁]

당사 임직원이 중요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외자와의 협의나 자문 등 협조를 구하 거나 이와 관련된 계약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비밀보장계약의 체결 등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 7 조 [공시책임자 등]

- ① 당사는 공시책임자 1인과 공시담당자 1인을 둔다.
- ② 공시책임자는 상근이사로서 당사를 대표하여 공시 기타 중요정보의 공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- ③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이를 한국거래소(이하 "거래소"라 한다)에 신고하여야 한다.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④ 공시책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「중요정보편람」의 내용이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반영하고 동 변경내용을 해당 중요정보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8 조 [중요정보의 공개]

- ① 중요정보의 공개는 공시책임자가 이를 행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관부서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공개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중요정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가 있거나 혹은 공시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 때에는 거래소를 통하여 소정의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를 행하고 지체없이 거래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한다.
- ③ 중요정보의 공개전에 중요정보가 외부에 누설되어 부당하게 이용됨으로써 불공정한 주식매매거래가 행하여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중요정보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개되기 이전에 보도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시방법에 따라 이를 공시한다.
- ④ 중요정보가 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로서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된 날로부터 1일이 경과된 때,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 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날로부터 1일이 경과된 때, 방송법에의한 방송(특수방송을 제외한다)중 전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방송을 통하여 그 내용이 방송된 후 12시간이 경과된 때 및 거래소가 설치, 운영하는 공시방송망을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후 24시간이 경과된 때에는 그 중요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.
- ⑤ 각 부서의 정보관리책임자는 중요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시책임자에 게 그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.



제 9 조 [보도기관으로부터의 취재]

- ① 중요정보에 관하여 보도기관으로부터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이를 담당한다. 다만, 부 특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제5조제5항의 규정은 중요정보에 관하여 보도기관으로부터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.

제 10 조 [주식 등 매매거래의 금지]

- ① 임직원은 중요정보임을 알게된 경우 그 공개전에는 당사가 발행한 주식 등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7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와 동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이 당사발행주식 등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
제 11 조 [통상의 매매의 자유]

임직원은 제10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, 당사의 자회사, 관계회사 및 거래처 주식 등을 매매할 수 있다. 다만, 제12조 내지 제15조의 제한 및 의무에 따라야 한다.

제 12 조 [중요정보업무 참여자 등의 당사 주식 등의 매매]

- ① 당사의 기획, 재무, 경리, 홍보 및 주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신기술, 신제품 등의 연구, 개발, 기획 및 상품화 업무 등에 참여하는 임직원이 당사주식 등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 요정보의 해당여부에 특히 유의하고 사전에 임원은 대표이사에게, 직원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
-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 및 소관부서장은 공시책임자에게 중요정보의 해당여부와 공개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.
- ③ 대표이사와 소관부서장은 중요정보로서 아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매매 기타 거래를 저지하여야 한다.
- ④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한 후 24시간(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제외한다)이 경과할 때까지 중요정보로서의 공개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매매 기타 거래를할 수 있다.

제 13 조 [임원의 당사주식 등의 매매]

- ① 임원이 당사 주식의 매매를 한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공시책임자는 임원의 당사 주식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및 제173조의2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보고를 증권선물위원회(제1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금융위원회)와 거래소에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[단기매매차익의 반환]



임직원이 당사 주식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 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이익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한 다.

제 15 조 [자회사 등의 내부중요정보 등]

- ①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된 당사의 자회사, 관계회사 및 거래처(이하 "자회사 등"이라 한다)의 미공개 중 요정보는 엄중하게 이를 관리함과 동시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임직원이 자회사 등의 중요정보를 알게된 경우 그 공개전에는 당해 자회사 등이 발행한 주식 등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임직원이 자회사 등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6 조 [교육]

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 및 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중요정보관리에 관한 지도교육을 행하고 중요정보관리의 중요성 및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관계법령의 제정취지를 철저하게 주지시켜야 한다.

제 17 조 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우선 적용]

이 규정에서 정한 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과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.

부 칙

제 1 조 [시행일]

- 1. 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이 규정은 202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

[별표] 중요정보편람

금감원 또는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항목	소관부서	비고
1.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	가. (주된)영업의 일부/전부 정지 등 나.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다. 단일판매계약, 공급계약 체결 및 해지 라. 제품 수거, 파기 등을 결정 마. 생산활동 중단, 폐업	경영관리본부	
2. 증권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	가. 증자, 감자 결정 나. 주식소각 결정 다. 자기주식 취득, 처분 등 라. 주권등의 분할, 병합 결정 마. 상법 제329에 따른 주식 전환 결정 바. 주식관련 사채 등의 발행 결정 사. 해외증권시장 상장결정 등 사항 아. 상장폐지 결정 자. 발행 어음의 위/변조 사실 확인	경영관리본부	
3. 투자활동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	가. 신규시설 투자, 시설외 투자 등 결정 나. 유형자산 취득, 처분 결정 다. 타법인출자, 출자지분 처분 결정 라. 출자비상장법인의 부도, 은행거래정지, 해산등	경영관리본부	
4. 채권·채무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	가.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나. 채무면제, 인수 결정 다. 담보제공, 채무보증 결정 라. 피보증(담보)법인의 부도, 은행거래정지, 회생 등 마. 선급금, 금전의 가지급, 금전 또는 증권 대여 결정 바. 발행사채의 원리금 미지급 사. 금융기관 등으로 받은 대출금의 원리금 미지급	경영관리본부	
5. 손익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	가. 천재,지변,전시,화재 등 재해 발생 나. 벌금,과태료,과징금,추징금 부과 사실 확인 다. 임원.직원등의 횡령.배임혐의 확인 등 라.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실(미실현분 포함)발생 마.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 바. 임원 등(퇴직자 포함)의 가장납입혐의 확인/확정 등	경영관리본부	
6. 결산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	가.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나. 반기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비적정 등다. 반기감사보고서상 매출액 분기3억, 반기 7억 미달라. 사업년도 결산 매출액 등 30%이상 증가/감소다.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사유 발생바. 주식배당에 관한 결의사.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 결정아. 회계처리기준 위반관련 상장법인, 임직원 고발 등	경영관리본부	
7. 지배구조 또는 구조개편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	가. 최대주주, 대표이사 변경 나.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, 탈퇴 결정 다. 주식교환, 주식이전	경영관리본부	



	라. 영업양·수도, 합병, 분할, 분할합병 등 마.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		
8. 존립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	가. 부도, 은행거래정지 나. 회생/파산 관련 다. 해산사유 발생 라. 거래은행/채권금융기관의 경영관리 마. 주채권자와 경영정상화 계약확정	경영관리본부	
9. 다음의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·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판결·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	가. 발행 증권의 효력, 권리변경, 위조/변조 관련 소송 나. 청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소송(비송사건 포함) 다. 경영권 분쟁 소송 라.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	경영관리본부	
10.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에서의 결의가 있은 때	가.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결의 나. 주주총회 결의	경영관리본부	
11. 연구·사업개발과 관련하여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	가.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나.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 결정 다. 임상시험 결과 라. 임상시험 중지(중단, 취소 등) 마.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 신청 바.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 사. 기술이전 계약금액이 자기자본(매출액)의 10% 이상 아. 기술이전 계약금액이 자기자본(매출액)의 10% 이상 자. 중요한 기술이전 계약이 해제(해지)된 경우 차. 확정된 마일스톤, 로열티 금액이 자기자본(매출액)의 10% 이상 카. 확정된 마일스톤, 로열티 금액이 자기자본(매출액)의 10% 이상 하. 학정된 마일스톤, 로열티 금액이 자기자본(매출액)의 10% 이상 타. 보유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국책사업 과제 선정 파. 중요한 특허권 관련 계약	기업부설연구소 경영관리본부	



내부정보 관리규정 제개정

차수	제(개)정일	시 행 일	주요 개정내역	비고
1	2021.08.01	2021.08.01	내부정보 관리규정 제정	
2	2022.06.15	2022.06.15	내부정보 관리규정 1차 개정	
3				
4				
5				
6				
7				
8				
9				
10				